

**13. 외국펀드 또는 금융사가 국내금융사를 인수할 때의
관련법규**

세부 내역

“붙임 참조”

<붙임>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전문개정 2002.4.27] 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

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증권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은행법시행령】

제4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주주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관련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주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당해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4조의3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8.21]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1]

제6조 삭제 <2002.8.21>

제7조 삭제 <2002.8.21>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개정 2002.8.2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 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12, 2002.8.21>

④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8.21>

[별 표] <개정 2005.5.26>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5조관련)

구 분	요 건
1. 한도초과본유주 주가 금융감독기 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 (증권투자회사법 에 의한 증권투자 회사를 제외한다) 인 경우	<p>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p> <p>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p> <p>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p> <p>라.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 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실이 없을 것</p>
2.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 투자회사인 경우	<p>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제1호 및 제2호외의 내국 법인인 경우	<p>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회사에 한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p>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외국인인 경 우	<p>가.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p> <p>다.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한다.</p> <p>마. 제1호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간접투자자 산운용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 사인 경우	<p>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 고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 외국 금융사 등이 증권회사를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법】

제32조 (허가의 요건)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1]

제32조의3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7조의2 (허가의 세부요건) ① ~ ③ (생략)

④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⑤ ~ ⑥ (생략)

제18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3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7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증권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안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별표 2]

지배주주의 요건(제18조 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지배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이하일 것</p> <p>라.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p>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 다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 다목 또는 제4호 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외국 금융사 등이 선물회사를 인수할 경우

【선물거래법】

제38조 (허가의 요건) 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38조의2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선물거래법시 행령】

제10조 (선물업허가의 세부요건) ① ~ ② (생략)

③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7, 2006.1.27>

1.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 시 행령」 제10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 ~ ⑤ (생략)

[전문개정 2000.7.10]

제10조의3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3. 주요주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지배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선물회사의 등기부등본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⑧그 밖에 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7]

[별표 2] <신설 2006.1.27>

지배주주의 요건(제10조의3 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1. 지배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지배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법인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이하일 것</p> <p>라.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지배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39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지배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p>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선물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비고 : 1. 지배주주의 요건을 주요주주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주요주주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를 말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및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을 말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는 제1호 다목 또는 제4호 다목의 지배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업법 제6조 제4항에서 보험업 허가시의 주요출자자
요건과 동일한 요건 적용

○ 붙임 : 참고 법령

참 고 법령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④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및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시행령>

제10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③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삭 제<2005.3.31>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한 자(이하 "공동보유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본인
- 나. 임원의 임면 등 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4.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라 함은 제1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0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당해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5.3.31>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주요출자자의 요건(제10조 제4항관련)

4.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p>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당해 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만, 당해 기업이</p>
----------------------------------	--

	<p>그 성격상 신용평가 또는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기준을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p> <p>라. 당해 기업(당해 기업이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 라목·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다)</p>
--	--

비 고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제4호 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